

이 지침은 특정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접촉을 허용하는 접근 금지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65세 이상의 사람(고령자)이나 피부양 성인과 그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이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 사이의 접촉을 반복적으로 막는 경우 법원은 접촉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 접촉을 허용하는 금지 명령을 내립니까?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을 허용하는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이 특정인과 기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인과 접촉하기를 원할 것
- 누군가가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이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막고 있을 것
- 접촉을 막는 사람은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이 접촉을 희망하는 사람에 의한 실제 학대 또는 학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막는 것이 아닐 것

신체적 또는 재정적 학대와 같은 다른 학대에 대한 금지 명령을 원한다면 [EA-100-INFO](#),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를 위한 금지 명령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법원은 접촉을 막는 사람에게 접촉을 막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허용하는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금지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에 추가하여 다음 사람은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을 대신하여 접촉을 허용하는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의 보호자 또는 수탁자

-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의 대리인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이 접촉을 희망하지만 이를 방해받고 있는 기존 관계가 있는 개인
- 법적으로 그러한 구제를 요청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타 사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금지 명령 신청서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명령의 송달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 보안관 또는 연방 보안관이 그 명령을 무료로 송달합니다. 아니면 귀하가 등록된 절차 송달인 또는 사적 당사자에 의한 송달을 주선하고 이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발부 받으려면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양식 EA-300, 접촉을 허용하는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금지 명령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경우 양식 [MC-025, 첨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EA-309, 접촉 허용을 위한 법원 심리 통지서](#)의 1번과 2번 항목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양식들은 법적 발행인이나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www.courts.ca.gov/for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촉 방해가 발생한 카운티 또는 접촉 방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금지 명령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셀프 헬프 센터 또는 법률 구조 협회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서기가 법원 심리 통지서를 통해 심리 날짜를 알려줄 것입니다.

명령이 얼마나 빨리 내려지나요?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과 접촉을 막지 못하게 하는 중지 명령은 심리 후에만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 날짜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명령의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령의 지속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접촉을 막는 사람이 저의 명령 신청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18세 이상의 사람(귀하나 본 사건에 연루된 사람 제외)이 금지 대상자에게 심리 통지서 및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기타 양식의 사본을 “송달”(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송달인은 [EA-200,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귀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 서기에게 [양식 EA-200-INFO, “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를 요청하십시오.

제가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예. 양식 [EA-309, 접촉을 허용하기 위한 법원 심리 통지서](#)에 있는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십시오.

법원 심리에 증인을 동반해야 합니까?

증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단지 귀하의 진술에 그치기 보다는 격리에 대한 증거가 더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래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증인
- 선서하에 작성된 증인의 서면 진술서
- 편지, 이메일

법원은 심리에서 증인의 발언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심리에 증인의 진술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MC-030,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좋은 생각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귀하는 법원이 배정하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있는 무료 및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셀프 헬프 센터에 관해서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누군가와 법원에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예. 심리 중에 함께 앉아 있을 사람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법정에서 귀하를 위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있는 경우)만 귀하를 위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 그리고 접촉을 막는 사람이 명령 취소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오직 판사만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신청한 사람이나 접촉을 막는 사람은 법원에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접수할 때 서기에게 법원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양식 [INT-300 통역사 신청서 \(민사\)](#) 또는 현지 법원 양식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통역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ourts.ca.gov/selfhelp-interpreter.ht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가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식 [MC-410,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MC-410-INFO,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지역 내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현지 정보 기재](#)]에 문의하십시오.]